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36
----------	------

2016년 3월 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22일
3. 상정일자 : 2016년 3월 8일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6년 3월 8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개정이유
 - 공립 각급 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살아있는 에너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추진방식 : 협동조합형
- 시설형태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 건물현황 및 시행자

순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연령)	건물등급	옥상면적 (㎡)	시행자
1	누원고	본관동	2002 (13년)	A	1,688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내역

(금액단위 : 천원)

학교명	건물명	설치면적 (㎡)	발전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건설비	연간 사용료
누원고	본관동	200	19.2	24,820	60,000	576

※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결과 최종 확정

- 사용·수익허가조건

- 사용료 : $30,000\text{원} \times 19.2\text{kW} = 576,000\text{원}$
- 허가기간은 10년(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 사업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단, 사업기간 내 매각이나 대수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조건(사업종료 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

적으로 유익할 경우 철거비용 예치 없이 기부채납 예정)

- 시설에 대한 대물·대인 등 손해보험 가입
- 시설물 설치로 인한 건물 옥상 누수 시 보수 조건
- 건물 구조검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동의안은 2016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36호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누원고등학교의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동 안건의 제출경위에 대한 검토

- 누원고등학교(도봉구 소재)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1일(제263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683호)과 2015년 10월 30일(제264회 정례회, 의안번호 제772호)에 제출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포함되었던 사업으로,

당시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소 사업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및 시의회 동의를 받기 전 발전시설을 설치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¹⁾

○ 이에 누원고등학교는 ① 건물의 안전성 검증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²⁾, ② 행정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³⁾, 의회의 동의를 있기 전까지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햇빛발전소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누원고등학교의 건물안전도는 A등급으로 안전성에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옥상 구조물에 대한 노후시설과 관련해서 도봉구가 2016년도 교육경비로 이를 개선·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과-36094(2015.10.27.))

[표1] 햇빛발전소 구조 검토 결과⁵⁾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건물등급	구조검토일	결과	설치기간
누원고	교사동	2002	A	2015.10.24.	구조안정성에 문제없음	'15.12.~

○ 또한 발전용량이 19.2kW로써 건설비(6천만원) 대비 발전용량은 적지만, 햇빛발전소 시행자인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햇빛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의 창출보다는 사회빈곤층 및 학교 저소득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 환원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건설비의 경우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원 600명을

1) 「신재생에너지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옥상 구조물에 대한 노후시설과 관련해서도 도봉구가 2016년도 교육경비로 이를 개선·보완할 계획에 있음.(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과-36094(2015.10.27.))

3) 누원고등학교-16033(2015.12.21.), “햇빛발전소 설치 서울시의회 동의전 설치 경위서 제출”
 “...시의회 동의 후 설치해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인지하지 못한...”, “...추후 이를 인지하고 12월 27일까지 해당 집열판의 철거를 도봉구청측에 요구...”

4) 누원고등학교-71(2016.1.6.), “서울시의회 동의 전 햇빛발전소 설치 건 철거 조치 중간보고”

5)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12398(2015.12.11.)

모집(1구좌당 10천원~3,000천원)하여 61백만원의 설치비용을 마련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소 설치는 2016년 2월 현재 공정률이 95%에 달하고 있어(행정관리담당관-1433) 동 시설을 철거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재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번 동의안의 경우 동의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지만 기설치 시설에 대한 사후추인의 성격을 갖는 만큼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관련 경과

일자	내 용
2015. 8.13.	햇빛나눔발전소 설치 추진에 따른 서울시의회 동의를 위한 설치 동의서 등 제출
2015. 8.21.	제263회 임시회 안건 제출(의안번호 제683호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2015. 9.18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서울시의회 수정가결(누원고 보류)
2015.10.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햇빛발전소)설치학교 서울시의회 심사 결과 알림
2015.10.28.	누원고등학교 햇빛나눔발전소 설치 추진 서울시의회 동의를 위한 수정자료 제출
2015.10.30	제264회 정례회 안건 제출(의안번호 제772호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2015.12.17.	햇빛발전소 설치(사용·수익허가) 서울시의회 동의전 설치 경위서 제출
2015.12.21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서울시의회 수정가결(누원고 보류)
2015.12.22	햇빛발전소 설치 서울시의회 동의 전 설치에 대한 경고 및 철거 조치 통보
2015.12.2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햇빛발전소)설치학교 서울시의회 심사 결과 알림
2016. 1. 6.	서울시의회 동의 전 햇빛발전소 설치 건 철거조치 중간보고
2016. 2.17.	햇빛발전소 서울시의회 동의 전 설치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
2016. 2.19.	누원고등학교 햇빛나눔발전소 서울시의회 동의 전 설치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1036
----------	------

제출연월일 : 2016년 2월 2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공립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살아있는 에너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2.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제27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5-256호」(2015.12.16.)
 - 2016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

3. 사업개요

- 추진방식 : 협동조합형
- 시설형태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 건물현황 및 시행자

순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연령)	건물등급	옥상면적 (㎡)	시행자
1	누원고	본관동	2002 (13년)	A	1,688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내역 (금액단위 : 천원)

학교명	건물명	설치면적 (㎡)	발전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건설비	연간 사용료
누원고	본관동	200	19.2	24,820	60,000	576

※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결과 최종 확정

- 사용·수익허가조건
 - 사용료 : $30,000\text{원} \times 19.2\text{kW} = 576,000\text{원}$
 - 허가기간은 10년(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 사업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단, 사업기간 내 매각이나 대수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조건(사업종료 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철거비용 예치 없이 기부채납 예정)
 - 시설에 대한 대물·대인 등 손해보험 가입
 - 시설물 설치로 인한 건물 옥상 누수 시 보수 조건
- 건물 구조검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5.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조성으로 에너지 교육의 장 활용
- 「원전하나 줄이기」 및 「블랙아웃 방지」 일조
- 햇빛발전소 구조물의 여름철 그늘 효과로 건물의 온도 강하

6. 향후계획

- 사용허가 신청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업자 → 학교)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사업자 → 서울시)
- 공사 착공 및 준공(사업자)

- 붙임 1.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2. 관련법령(발췌) 1부.

【붙임1】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소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배치도면 (본관 옥상)(빨간표시 부분이 구조물)



현황사진

【붙임2】

관 련 법 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이하 생략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⑦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 2016년 사용료(대부료) 공고 >

적용기간	사용료 및 대부료(단위: kW·년)
2016년	○ 설비용량 100kW 초과 : 3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3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9.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15. 소관재산중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